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79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문진석・이재관・한정애

김동아 • 이정문 • 김종민

박용갑・김문수・민홍철

박정현 · 조인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받도록 하되,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을 지속적으로 교육·관리하고 관련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 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와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원은 해당 교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보조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4 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원은 이 법 시행 이후 2 년 이내에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	4
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u>개업공인중개사·</u>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소속공인중개사와 제3항에 따
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	른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
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	원은 해당 교육
아야 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